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

1. 제출서류

- ①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간소화자료
-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전년도 기본공제 변동 없는 분은 제출 생략)
- ③ 장애인공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수첩) 사본 제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제출(전년도 공제자도 제출)
- ④ 공제항목별 증빙서류 → 본 안내문 8p 참조
- ⑤ 주택관련 공제항목 : 반드시 8p 참고하셔서 해당서류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⑥ 교회기부금공제 : 기부금영수증에 반드시 일련번호 표기가 되어야 하며, 교회소속증명서 함께 제출
- ⑦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 제출(교복구입비 및 교회기부금영수증 등)
- ⑧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중도입사자포함)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前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2. 제출방법

- ①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간소화자료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제출
 - ▶ 이용경로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인증서 및 간편인증 로그인
 - ▶ 제출방법(안내영상)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30682#>
 - ▶ 안내영상이 열리지 않는 경우 주소창에 위의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 ② 홈택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 우편 및 직접제출
 - ▶ 제출처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한국성서대학교 사무관리팀 양희정(☎950-5421)

- ③ 제출기한 : 2/1(목)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서류 모두 제출

④ 주의사항

- 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 시 공제요건에 맞는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요건 맞는 자료만 선택
- ②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요건검토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아래의 공제요건(2쪽~4쪽)을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여야 함.
 - ※ 모든 요건 검토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아래의 공제요건을 참고하여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제출받은 자료대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나 잘못 작성해서 주시면 근로자 본인이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③ 공제신고서 작성 후 제출 전에 다시한번 공제요건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연간 근로소득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함

(-) 비과세소득 →

48P

-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이내)
- ☑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총급여액 →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

(-) 근로소득공제 →

86P

총급여액	공제액 (2,000만원 한도)	공제액 (2,000만원 한도, 속산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총급여액 × 40%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총급여액 × 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총급여액 × 5% + 9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총급여액 × 2% + 1,275만원

근로소득금액 →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적용시 활용

(-) 인적공제 →

87P

-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63.12.31.이전)	20세 이하 (‘03.01.01.이후)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제한없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경로우대(70세 이상) (‘53.12.31.이전)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95P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97P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주택자금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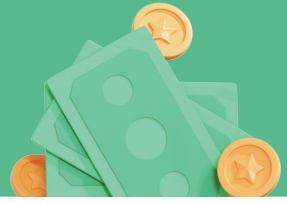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 그 밖의 소득 공제

114P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하고,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과세표준 →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x) 기본세율 →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의 6%
1,400만원~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 × 15%) - 126만원
5,000만원~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 × 24%) - 576만원
8,800만원~1.5억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1.5억원~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3억원~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5억원~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과세표준 × 45%) - 6,594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41P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여성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200만원 한도)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20만원 한도)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공제한도는 연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이월 공제
		10만원 이하	100/110	
1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제 76조)	근로소득금액×100%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분 25%)	
2 고향사랑기부금 (조특법 제58조)	(근로소득금액-1)×100% (연간 500만원 한도)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100	
3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1-2)×100%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10년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근로소득금액-1-2-3)×30%			-
5 일반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1-2-3-4)×10% +(근로소득금액-1-2-3-4)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이월 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10년
6 일반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1-2-3-4)×30%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 ☑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차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결정세액 →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구분	공제 요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등거 요건		
			주민등록등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공제	본인	×	×	×	
	배우자	×	○	×	
	직계존속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63.12.31. 이전
	직계비속, 등거입양자	20세 이하	○	×	2003.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1963.12.31. 이전 2003.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위탁아동		○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53.12.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 **나이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	○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8세이상)	○	○	-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손자녀 포함)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	○	
	의료비	×	×	○	
	교육비	×	○	○	직계존속 제외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	○	×	기본공제대상자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항목	과다공제 사례
1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
2 부양가족 중복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4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5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6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7 주택자금 과다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8 교육비 과다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9 의료비 과다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10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감면 신청 * 제외업종(예시)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 **1** ~ **5**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부록 6.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첨부서류

※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함)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인 적 공 제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표등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본인 작성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학교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요양기관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상 형편)	본인 보관		
	입양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읍·면·동주민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청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읍·면·동주민센터	국세청
	상이자	상이자증명서 사본	국가보훈처	
	그 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의료기관	
주 택 자 금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주(貸主)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주택 자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시·군·구청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소, 본인 보관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 시)	금융회사 등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본인 작성	
	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관리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본인 작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카드회사	국세청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
연금 보험료	퇴직연금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연금저축계좌	연금납입확인서	연금계좌취급자	국세청
보험료	보장성보험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사업자	국세청
의 료 비	의료비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 작성	
	의료기관·병원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국세청
	난임시술비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안경(콘택트렌즈)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국세청 (신용카드 사용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의료기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병의원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구입처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요양기관	국세청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의료비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등	
	산후조리원비용	이용자의 성명과 이용대가를 확인한 영수증	산후조리원	국세청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보험회사 등	국세청
교육비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기관	국세청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기관	국세청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원	
	교복구입비	교육비납입증명서	구입처	국세청 (신용카드 사용분)
	학교 외 도서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교육기관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등	국세청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사회복지시설 등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납입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등	국세청
	국외교육비	교육비 납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국외 교육기관	
재학증명서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교육기관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본인 작성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	국세청	
	고향사랑기부금 영수증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국세청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미분양주택확인서 (근로자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금융기관이 발행한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본인 작성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월세액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국세청 (공공주택 임대사업자)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본인 보관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국세청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음)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	재외공관	

※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할 수 있음

※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증명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